

감사위원회를 위한

Trend Report 2021 Vol.2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비금융업 127개 사, 금융업 38개 사)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구성, 독립성, 전문성 및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에서 2020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² 사외이사는 총 534명 (비금융업 412명/금융업 122명), 2021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110명 (비금융업 85명/금융업 25명), 중도 사임 또는 종임된 사외이사는 132명(비금융업 89명/금융업 4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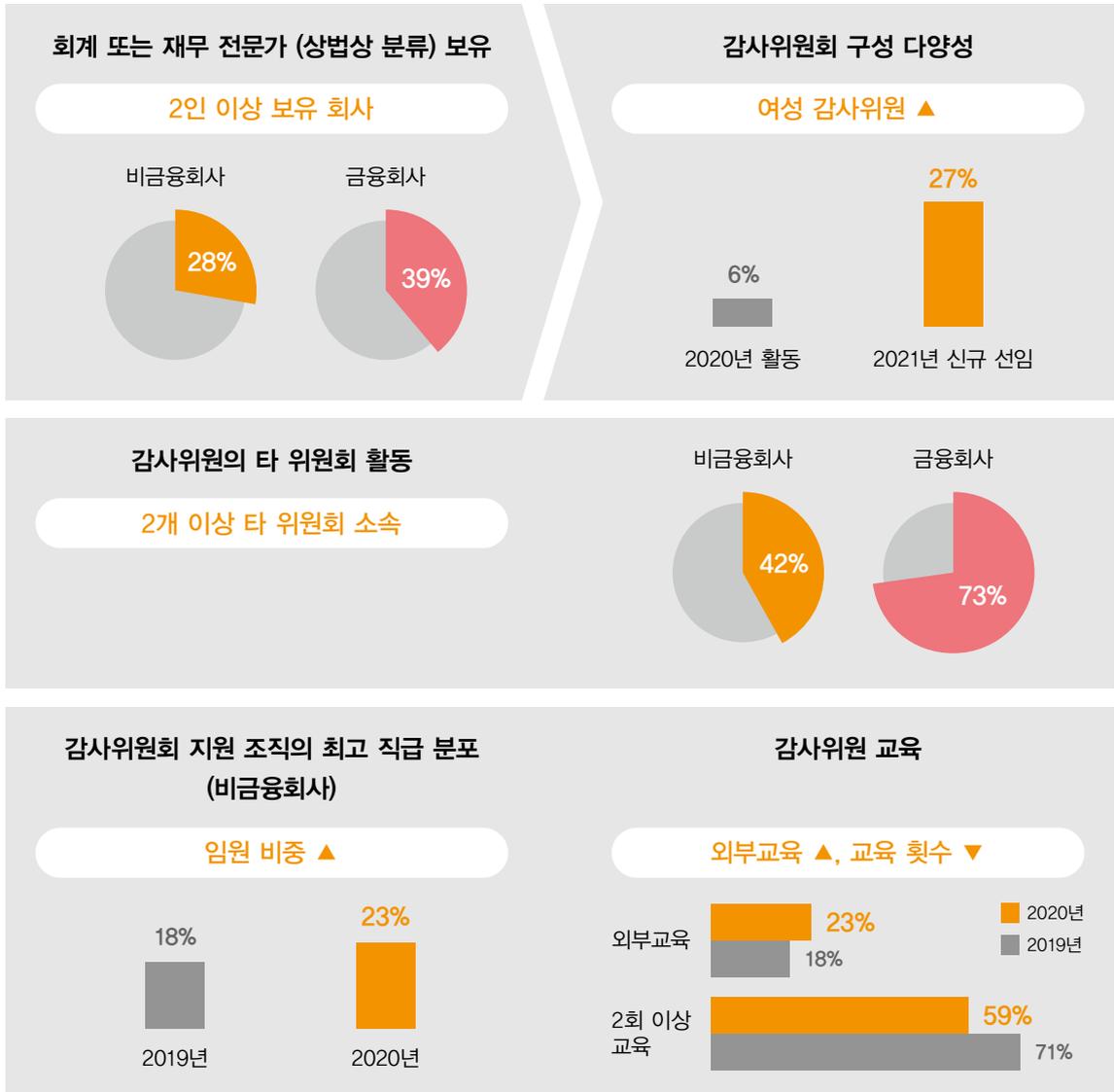
1 금융회사 중 감사가 설치된 중소기업은행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2020년 중 종임되거나 중도사임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Contents

1. 구성	4
2. 독립성	6
3. 전문성	7
4. 활동성	11
5. 감사위원회 운영	15

Key Findings



감사위원회 제도는 1998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의 하나였다. 그리고 1999년부터 대규모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관심은 지난 몇 년간 가장 높았다. 그 이유는 외부감사법의 전부 개정을 포함한 회계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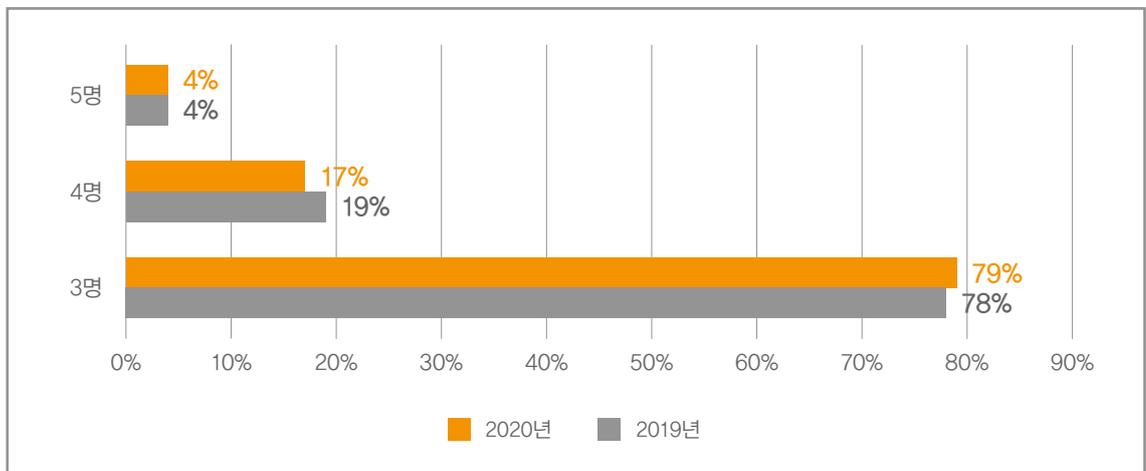
2018년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해야 하며, 강화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운영도 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규모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구성

1. 구성원 수

상법과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모두 최소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80%에 가까운 회사가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대 인원은 5인으로 분석 대상의 4% 정도가 이에 해당했으며, 모두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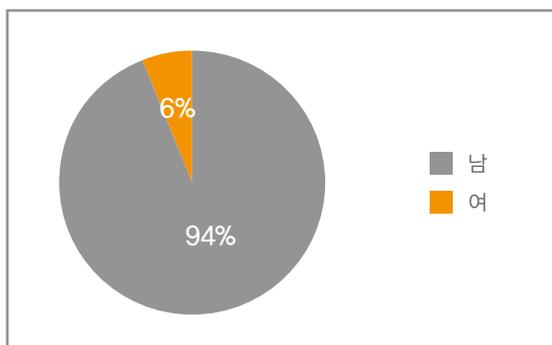
감사위원회 구성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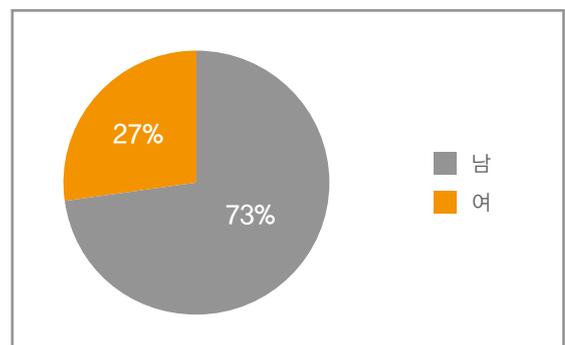
2. 성별

2020년 2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사회를 남성 이사만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두어야 한다. 동 규정은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2022년 8월부터 의무화되지만, 이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감사위원회 구성 성별을 보면 2020년에 활동했던 감사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6%(534명 중 30명)에 불과했으나, 신규로 선임된 감사위원은 27%(110명 중 30명)가 여성으로 비율이 급증하였다.

2020년 활동 감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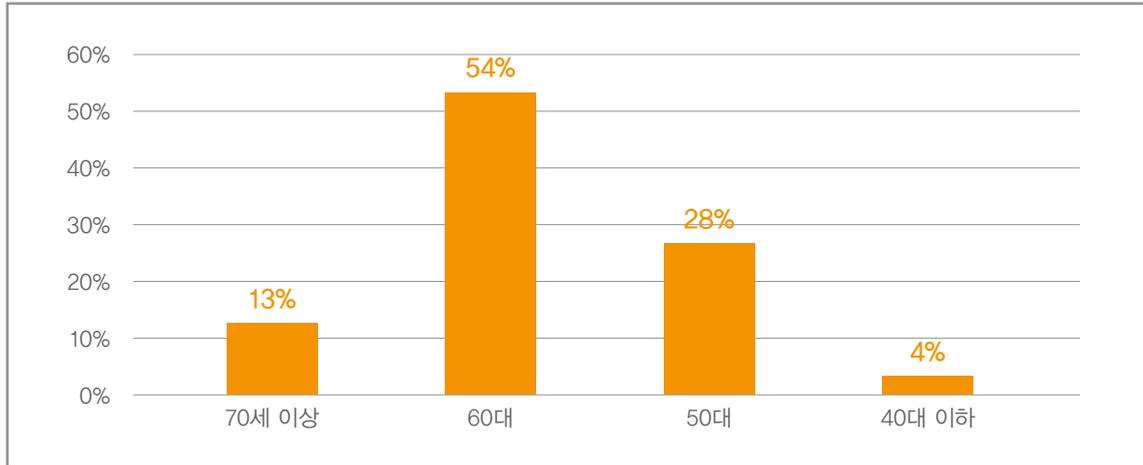
2021년 신규 선임 감사위원



3. 연령

2020년에 활동한 감사위원의 평균 연령은 62.4세로 나타났다. 감사위원의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대 순이었다.

감사위원 연령 분포 (2020년)



독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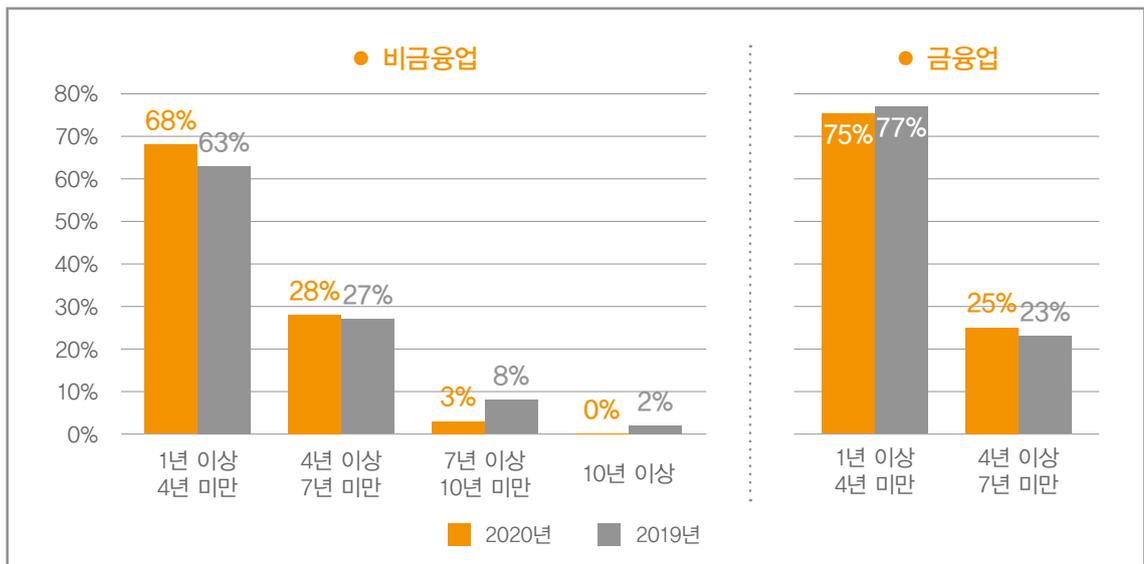
1.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중

분석 대상 기업 165개사(전기: 157개사)중 비금융회사 5곳(전기: 5곳)과 금융회사 4곳(전기: 4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내용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2. 재직기간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외이사의 재직기간 제한이 엄격해졌다.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강화된 요건이다. 또한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했을 때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2016년부터 적용 받아왔다.

감사위원 재직기간



분석 대상 기업에서 2020년에 활동한 감사위원(총 534명)은 평균 2.8년(전기: 3년) 정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융회사 2.9년(전기: 3.3년), 금융회사 2.4년(전기: 2.5년)으로 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기간별 분포에서는 가장 많은 감사위원이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는 앞서 설명한 상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선임된 감사위원들이다.

전문성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최소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둘 것을 요구하는 상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또한 상법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을 과거 경력 위주의 형식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모범규준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즉, 모범규준은 실질적인 감독 업무 수행 능력에 기반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어, 과거에 비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공시된다. 각 감사위원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지 여부와 해당하는 전문가 유형,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경력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

2020년 비금융회사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412명의 주요 경력 분포를 보면 학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계 8%, 재무 4%, 그 외 전공 23%로 모두 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관료 20%, 법률전문가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학계 출신이 늘어났고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학계 출신은 회계 6%, 재무 9%, 그 외 전공 16%로 모두 31%를 차지하여 비금융업보다는 비중이 낮았다. 대신 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나타나 20%인 비금융회사보다 높았다.

최근 3년간 경력별 감사위원 현황

● 비금융업

(단위: %, 반올림)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 ⁽¹⁾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 ⁽²⁾	회계 ⁽³⁾	관료	법률 전문가 ⁽⁴⁾	기타
2020 (총 412명)	33	31	13	15	31	28	94	82	65	20
	8%	8%	3%	4%	8%	7%	23%	20%	16%	5%
2019 (총 394명)	28	28	12	12	24	30	85	91	66	18
	7%	7%	3%	3%	6%	8%	22%	23%	17%	5%
2018 (총 383명)	23	23	10	10	25	30	85	90	68	19
	6%	6%	3%	3%	7%	8%	22%	23%	18%	5%

● 금융업

(단위: %, 반올림)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 ⁽¹⁾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 ⁽²⁾	회계 ⁽³⁾	관료	법률 전문가 ⁽⁴⁾	기타
2020 (총 122명)	9	7	2	11	15	4	20	35	16	3
	7%	6%	2%	9%	12%	3%	16%	29%	13%	2%
2019 (총 115명)	7	8	1	9	13	2	20	35	15	5
	6%	7%	1%	8%	11%	2%	17%	30%	13%	4%
2018 (총 111명)	3	7	-	9	15	2	17	40	14	4
	3%	6%	0%	8%	14%	2%	15%	36%	13%	4%

(*) 동 표는 각 감사위원의 최근 경력을 기준으로 1인 1개 범주로 분류하였으나, 아래 '2020년 상법상 범주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회사의 공시에 따라 중복 공시도 포함하여 분류하였음

- (1) 재무팀장, 재무 관련 임원 포함
- (2) CFO 등에 포함되는 경영진 제외
- (3) 회계 또는 재무 전공 제외
- (4)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학 전공 교수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상법이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경력을 포함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20년에 활동한 비금융업 감사위원 412명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분류된 감사위원은 166명으로 40%를 차지하며, 금융업 감사위원의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비율이 48%로 나타났다. 상법이 구분하는 유형에 따라 나뉘보면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와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상법상 범주³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2020년)

● 비금융업: 감사위원 총 16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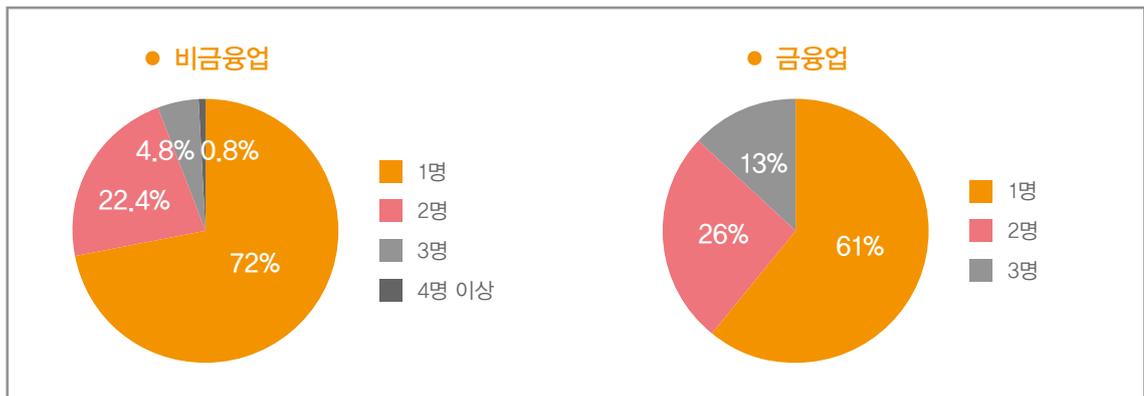
	수*	비율
회계사(1호 유형)	42명	23.5%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2호 유형)	60명	33.5%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3호 유형)	16명	8.9%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61명	34.1%
계	179	

● 금융업: 감사위원 총 58명

	수*	비율
회계사(1호 유형)	11명	18%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2호 유형)	25명	40%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3호 유형)	2명	3%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24명	39%
계	62	

* 동 표는 회사의 공시에 따라 중복 공시도 포함하여 분류하였음. 회사에 따라, 경력이 중복되더라도 1개의 범주로만 공시하는 경우도 있음.

상법상 범주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보유 현황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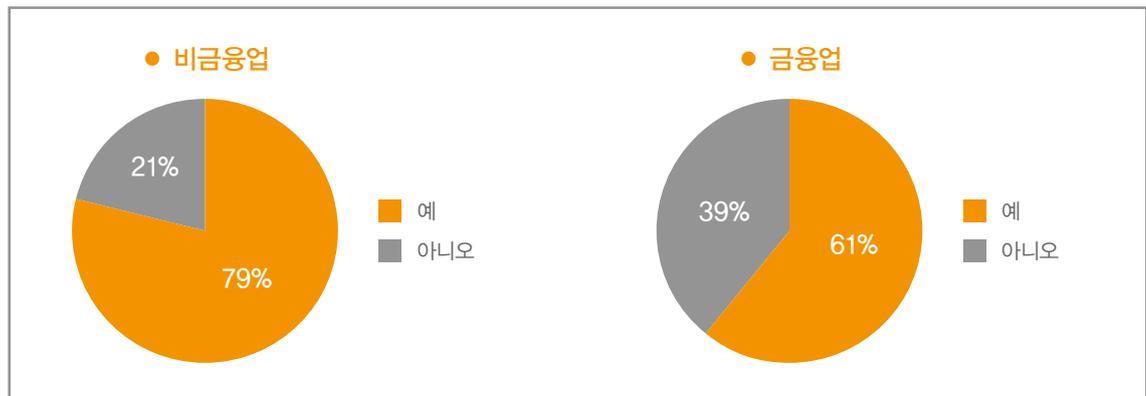


참고로 모범규준 매뉴얼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이 법규에서 정해 놓은 자격 및 경력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및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경험, 지식 및 역량으로 ①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적용하고 있는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 ② 회사가 수행한 회계추정, 충당금, 적립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③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감사해 본 경험, ④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⑤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를 열거하고 있다.

2. 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비금융업의 경우 80%에 가까운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나타났으며, 금융업의 경우 61%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이와 같은 비율은 감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비율과 비교할 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감사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갖추으로써 감사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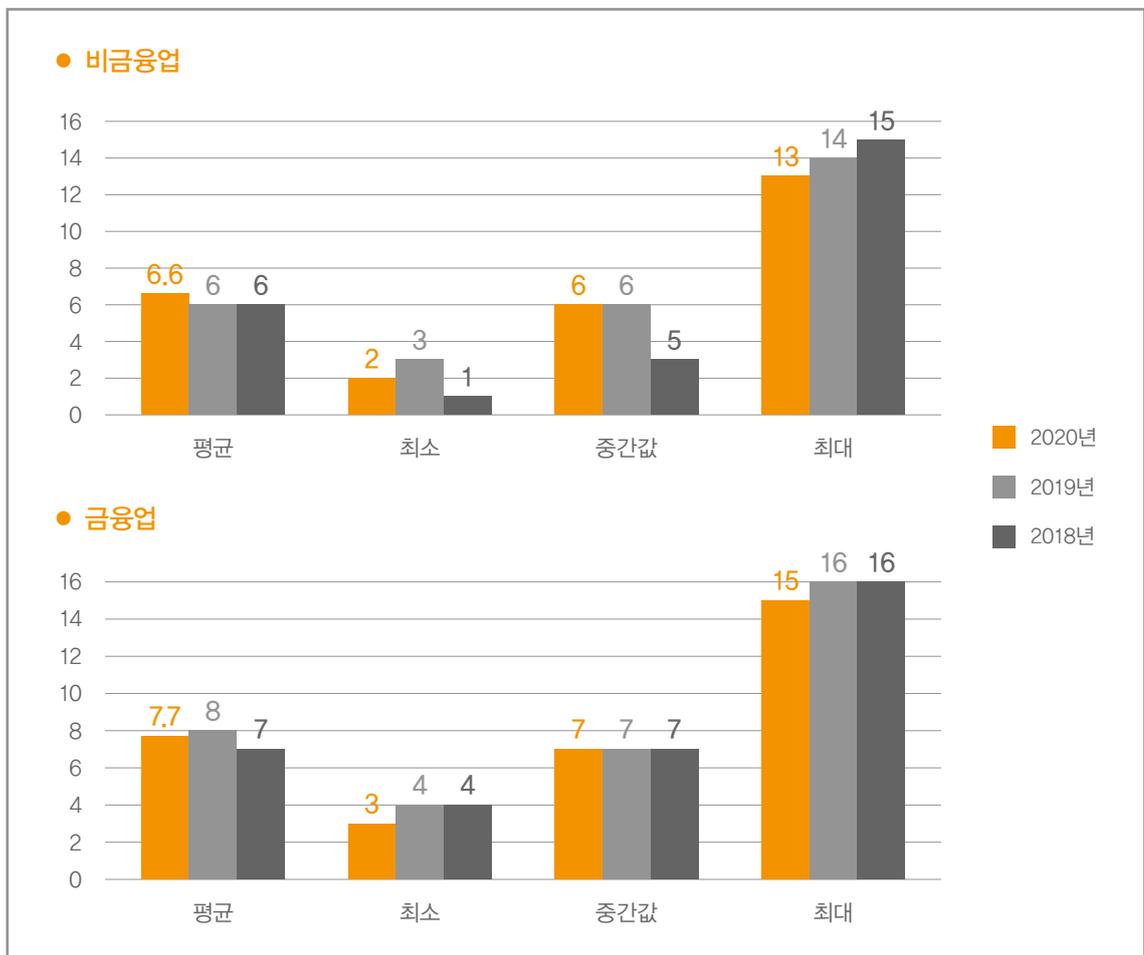
활동성

1. 감사위원회 회의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를 대용치로 사용한다. 물론 회의의 사전 준비, 진행 방식, 소요 시간, 회의 참석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회의 활동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회의 횟수는 감사위원회 활동의 객관적인 측정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분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는 2020년에 평균 6.6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경우 평균 7.7번 회의를 개최하여 비금융회사보다 횟수가 많았으며,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안전에 대해,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연간 감사위원회를 4회 미만 개최한 경우에 반대투표를 권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한편, 감사위원별 회의 출석률을 살펴본 결과, 비금융회사의 경우 91%(전기: 81%)의 감사위원이 100%의 출석률을 보였고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중 89%(전기: 71%)가 100% 출석률을 보였다. 감사위원회의 책임 강화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증가하고 연간 감사위원회 계획 수립 등 운영 측면에서의 효과성이 증대되면서 출석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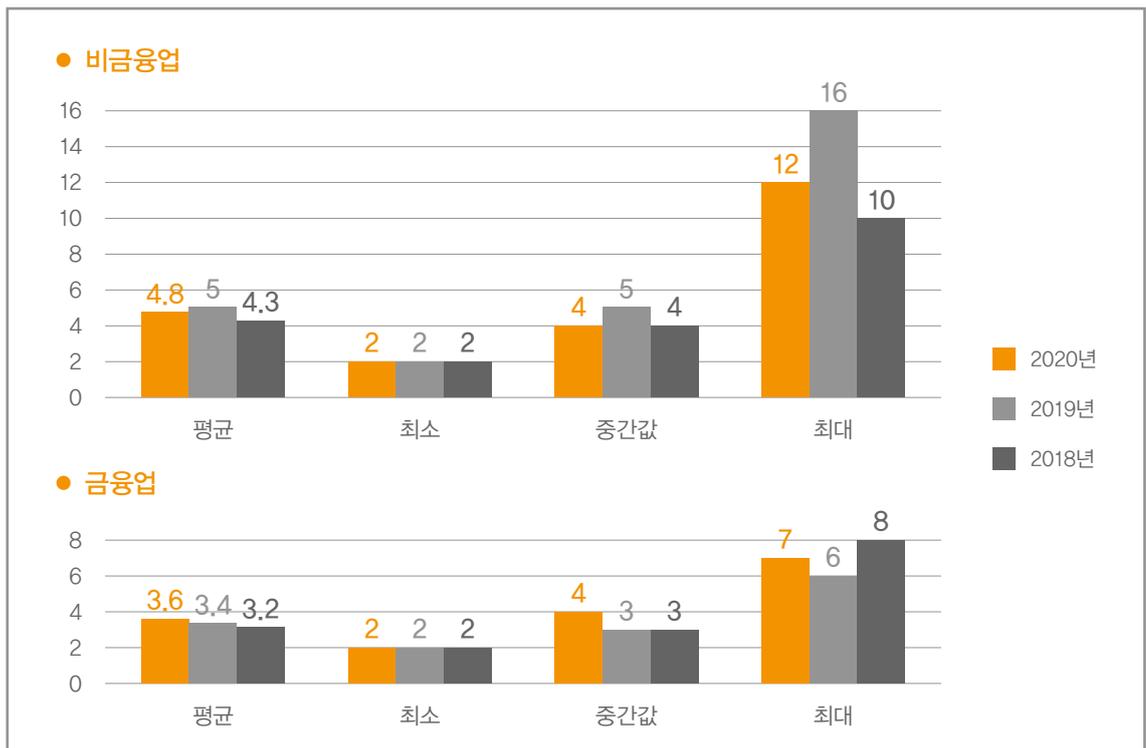
한편,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연평균 18개(전기: 18개)의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의 당 평균 2.7개(전기: 3개) 정도의 안건을 다루었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총 안건 중 결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의 비중은 31.5%(전기: 40%)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연평균 27.5개(전기: 27개)의 안건을 논의하여 회의 당 평균 3.6개(전기: 4개) 정도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총 안건 중 결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의 비중은 37.7%(전기: 45%)였다.⁴

2.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감사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는 평균 4.8회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가장 적게 커뮤니케이션한 감사위원회는 2회,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한 감사위원회는 총 12회 커뮤니케이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는 평균 3.6회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최소 횟수 2회, 최대 횟수 7회였다.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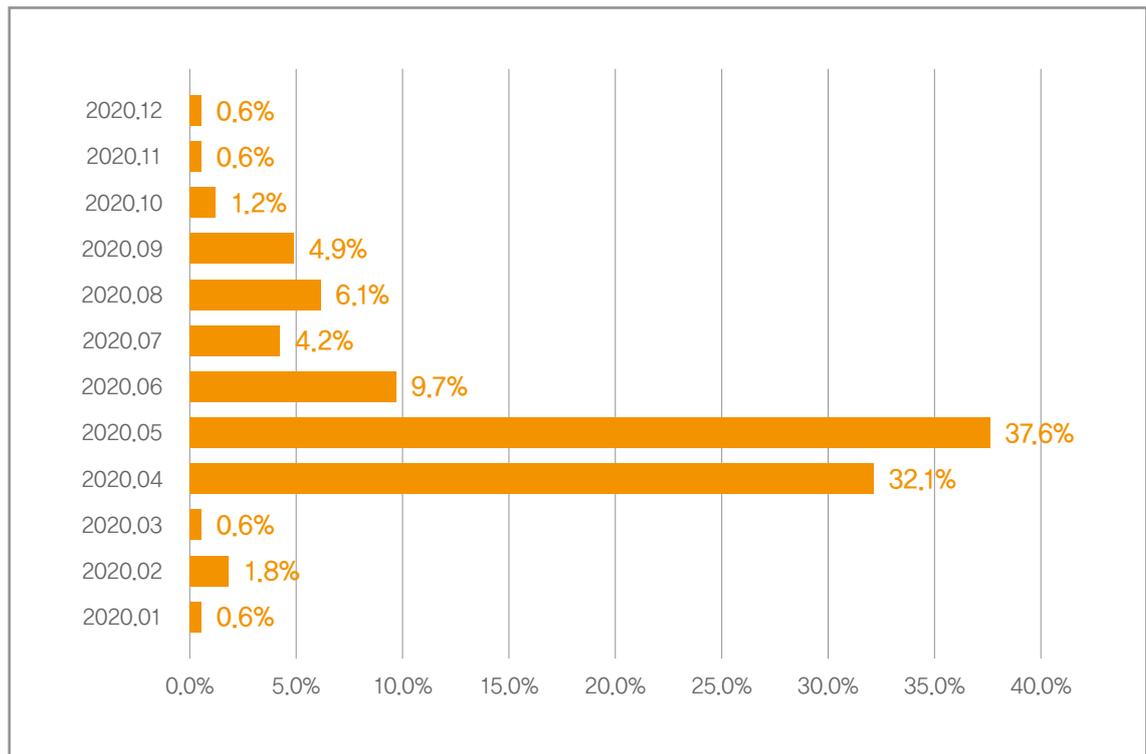


4 결의 안건을 구분 표시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고 분석함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에 감사위원회 구성원과 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가 참여하였다. 비금융회사의 경우 재무담당이사(임원) 또는 재무팀이 참여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총 12개(전기:18개)였다. 동 12개사 중3개(전기: 18개사 중 2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재무담당이사(임원) 또는 재무팀이 포함되어,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회사는 1개사를 제외하고는 재무담당인원이 포함되었다고 기재한 곳이 없었다.

한편,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계획 단계에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에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시기를 확인한 결과, 82.4%의 기업이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가 조기에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과 시기적절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보완하고 평가를 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함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최초 커뮤니케이션 실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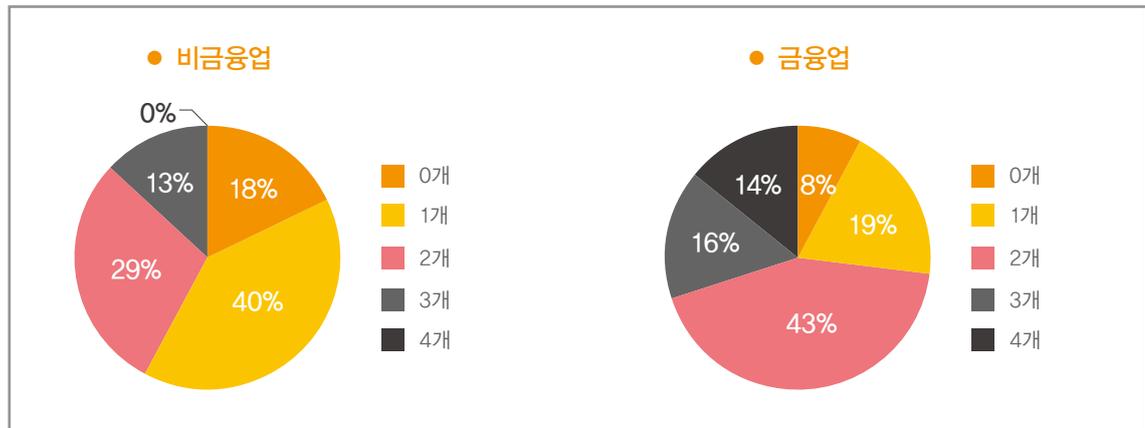


3.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활동

상법은 대규모 상장기업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둘 것을 요구한다. 법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외에도 이사회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한다. 또한, 최근 ESG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별도의 ESG 위원회를 두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 내 위원회 수가 많아지면, 소속된 위원회가 많은 이사의 경우 업무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 분석 대상 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 1개 또는 2개의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각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의 양과 중요성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소속 이사가 부담할 업무량을 평가하고, 적절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위원회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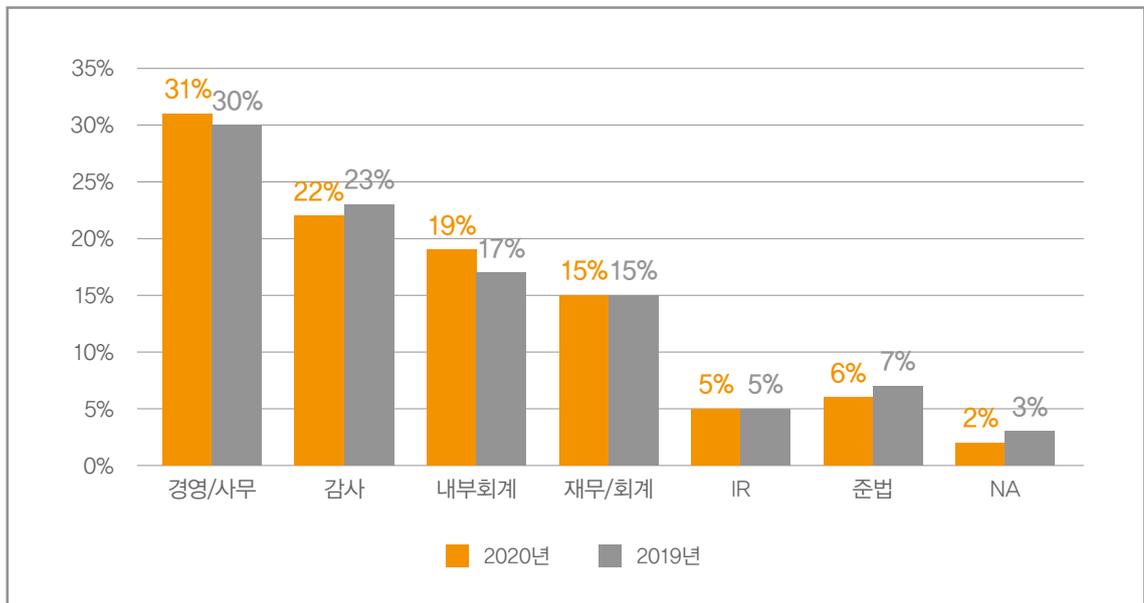
감사위원회 운영

1.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강화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회의체로 운영되며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일상적인 업무감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2020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영/사무⁵, 감사, 내부회계 및 재무/회계 순으로 지원 조직이 공시되었으며, 내부회계 관련 조직의 비율이 2% 포인트 증가하였다. 지난 3년간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내부회계 관련 조직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와 인증 수준이 감사로 강화된 데 대응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현황 (비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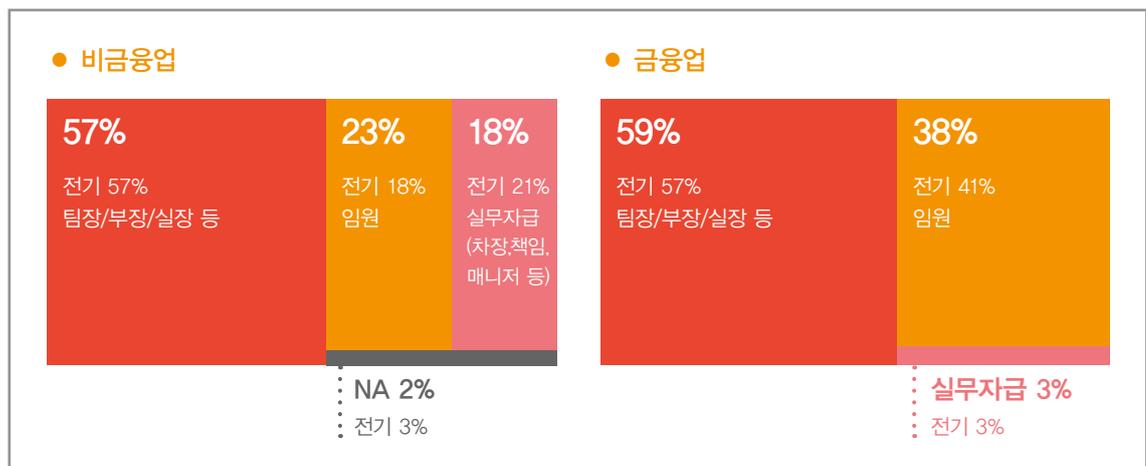
5 경영/사무' 조직에는 감사위원회/이사회 사무국(165개사 중 12개사로 7.2% 감사위원회 사무국 7개, 이사회 사무국 5개), 경영개선/관리/지원/기획/진단팀, 기업문화팀, 윤리경영팀, 전략기획팀, 총무팀, 투명경영팀 등이 포함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지원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재무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감독해야 하는데, 그 지원 조직이 재무보고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수행하는 부서인 경우 지원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감사위원회 지원조직)를 설치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있다고 공시한 회사는 54%⁶이며, 지난 3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로 공시된 경우는 감사 관련 조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내부회계 관련 부서 순이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란,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 보장을 위해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등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 등이 요구되어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운영은 과거의 관행과 차이가 크고, 실질적인 독립성을 위해 조직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금융업의 경우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은 팀장/부장/실장이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임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보다 증가하여 23%의 비율을 보였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독립성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책임자는 상시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이슈 발견 시 적시에 보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과 평가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갖도록 권장한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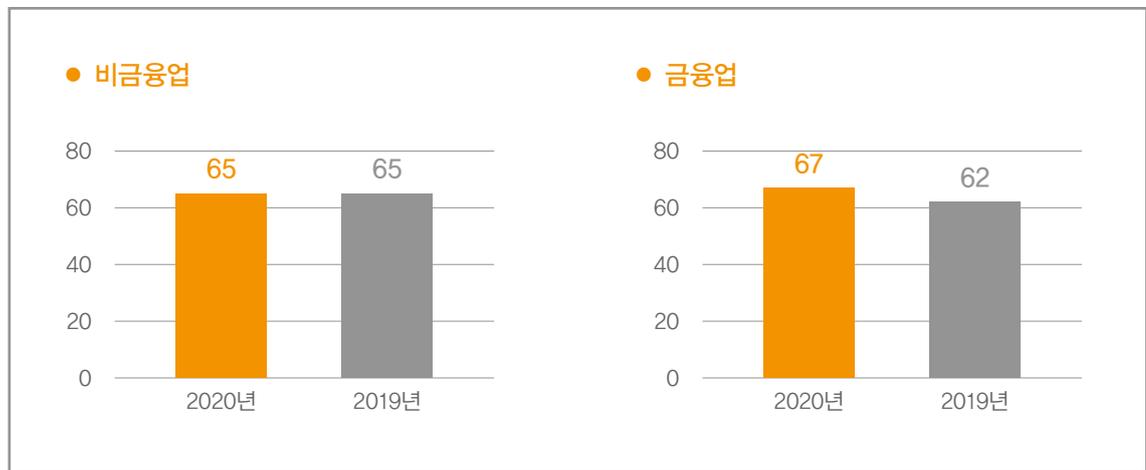


2. 감사위원 보수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엄중해진 책임으로 연결되어 적절한 감사위원 보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모범기준은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 노력 및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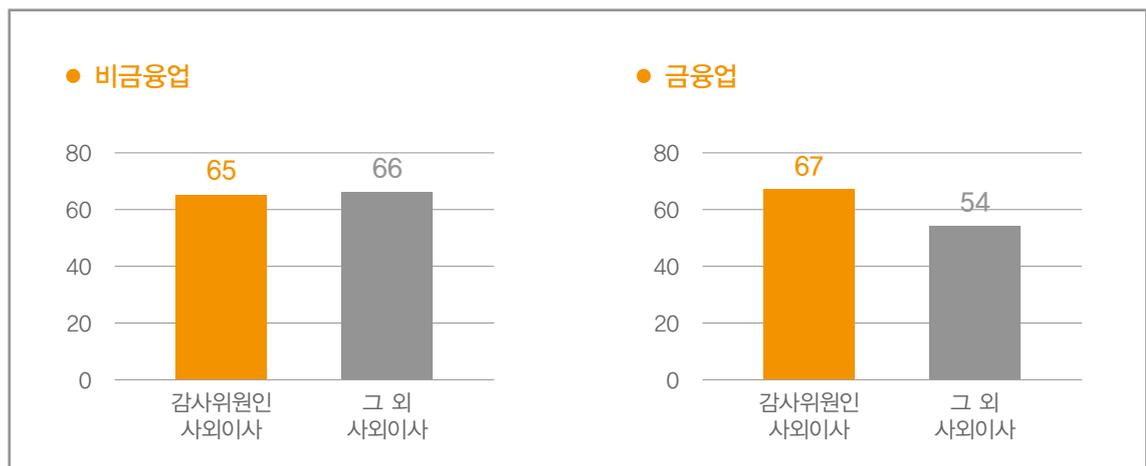
감사위원 평균 보수

단위: 백만원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보수와 비교 (2020년)

단위: 백만원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 평균 보수는 65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평균 보수는 6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결합되어 지급된다.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회의비, 위원장 추가 수당, 업무추진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 제공, 사무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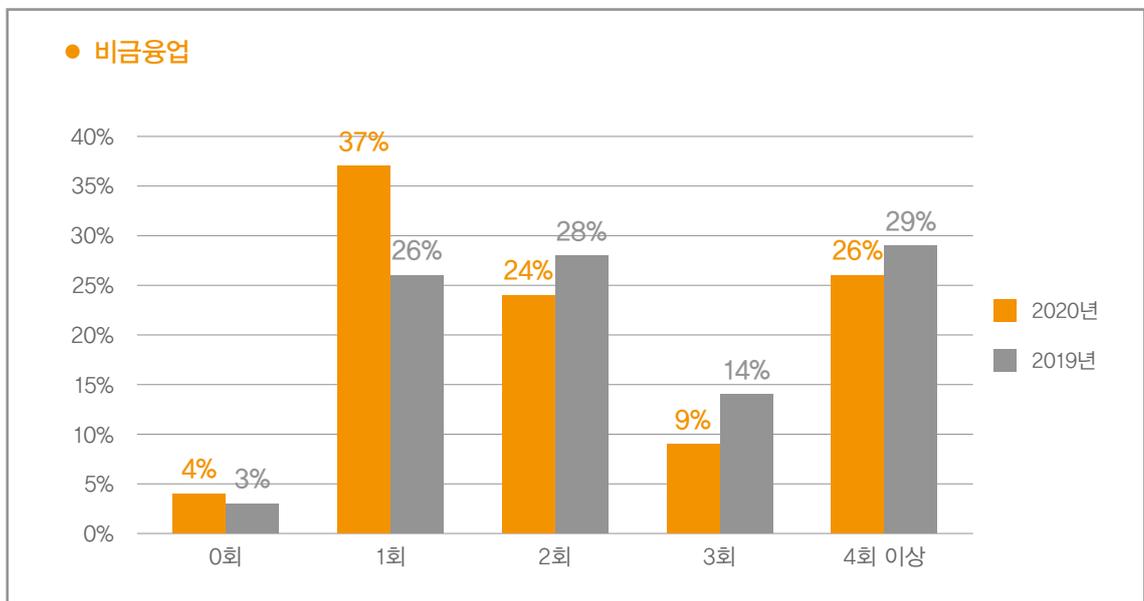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를 비교한 결과 비금융회사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보수 평균이 13백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감사위원 보수는 기업의 규모, 산업 및 사업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감사위원회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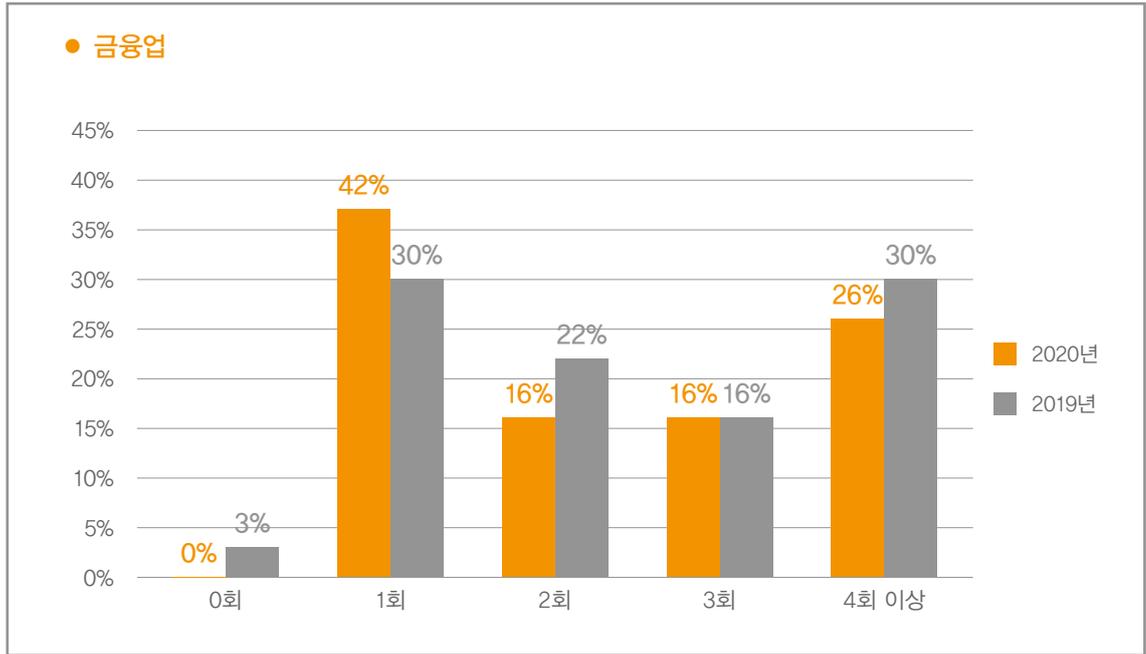
3. 감사위원 교육 제공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위원은 적절한 입문 및 보수 교육을 받아야 실효성 있는 감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관련 법규 및 제·개정 현황, 사업과 산업의 내용 및 변동 사항 등의 주제들이 교육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급변하는 최근 시장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교육·훈련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제공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 이후 주목받는 정보이다. 2018년에는 분석 대상 회사의 36%가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전년도부터는 급감하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에는 1회의 교육만 제공한 회사가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Covid-19로 인해 세미나 등의 이벤트가 제한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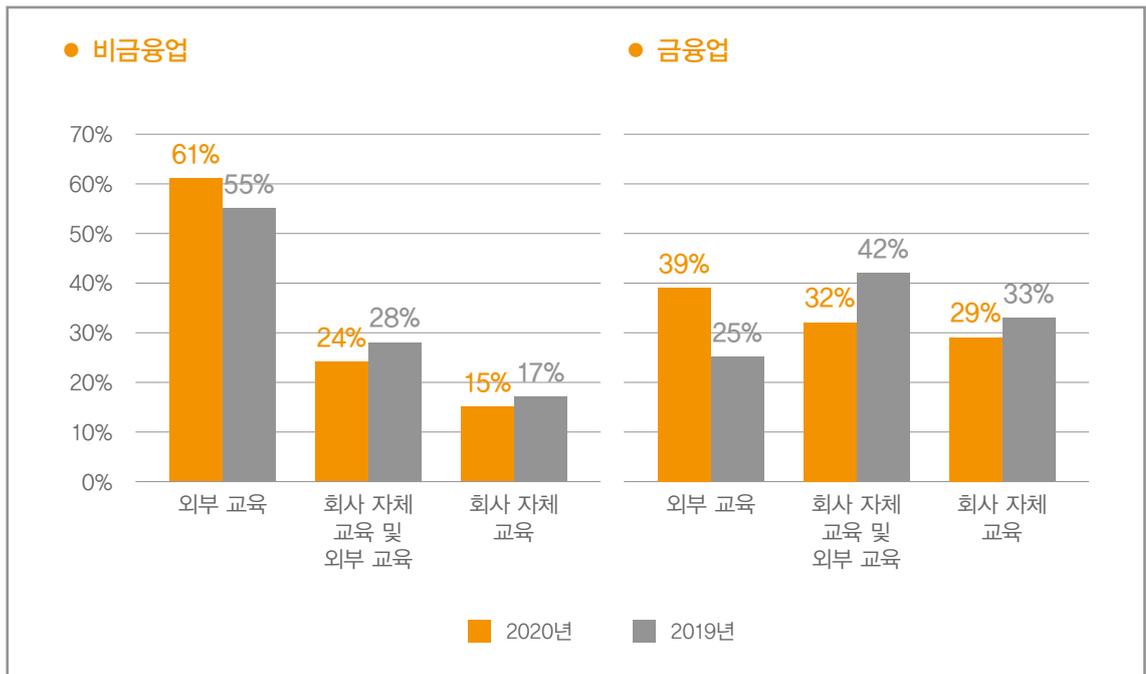
교육 제공 횟수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외부 교육만 제공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교육의 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사 및 산업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하고, 회계 및 감사 기준, 관련 법규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은 외부감사인이나 전문 교육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도와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적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면 감사위원회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 실시 주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61위, 2020년 46위에 이어 2021년에는 37위를 기록하여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다. 회계개혁이 순위 상승을 전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교하면 회계투명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당사자이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내부통제 등 전통적인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Covid-19와 기후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ESG의 중요성 증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SG 중 G(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인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독립된 내부감사기구로서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상충될 수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모범사례의 참고, 기업문화를 고려한 실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비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 증대는 재무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에게 또 다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는 기업 환경과 제도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Contacts

감사위원회센터 | acc@samil.com (T. 02-3781-3211)

이 용 재 파트너
yong-jae.lee@pwc.com

김 재 윤 파트너
jae-yoon.kim@pwc.com

하 미 혜 연구위원
mihye.ha@pwc.com

acc.samil.com

S/N: 2109A-RP-014

© 2021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